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구별할 것 없이 이는 중대한 근로계약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버스운전수가 배차지시를 받고서도 동기회 모임을 이유로 1일 결근하여 예정노선이 1회 결행, 2회 대리운행된 사안에서 회사의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Q 운전기사가 배차지시를 받고서도 동기회모임 등을 이유로 운전결행 및 대리운행제한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조치는 정당인지 여부

A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있어서 사용자가 승무직 근로자(운전수)에 대해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차지시는 기업의 목적수행을 위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기초해 근로자에 대해 내리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하고 이와 같은 배차지시는 사용자가 운전수를 채용함에 있어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운전수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용자의 배차지시 곧 승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

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채무불이행이 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된다.

정기적으로 계속적인 여객운송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정해진 시간에 예정된 차량운행이 순조롭게 되도록 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업무의 특수성 및 공익성을 고려하면,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수가 회사의 배차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여객운송이 중단되는 사태가 초래되거나 운송집사가 문란케 된 경우에는 그것이 배차지시를 받고 무단결근을 해 버린 경우이든지 아니면 출근을 하였으면서도 이를 거부한 것인지를

Q 징계당시 해고사유로 삼지 않은 사실은 나중에 해고처분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지 여부

A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징계사유의 엄격성, 한계성, 명시성이 요구되는 것이어서 그 징계사유에 속하는 사실 및 그 기준의 당부에 따라 그 유효여부를 판가름할 것이고 당해 징계사유가 아닌 다른 사실까지도 아울러 참작하여 유효여부를 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회사가 주장하는 위 사실들이 진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이 사건 해고사유로 삼지 아니한 이상 이로써 위 해고처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 한국중합노동법률인하술사무(031-677-7582-3)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木)은 그 정착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며, 토지의 소유자나 기타 권원이 있는 자가 특별히 토지에서 분리하여 과목만을 따로 처분한다는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그 토지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1.12.28. 71다2313).

따라서 그 구조나 가격에 비추어 대지와 독립한 물건이라 인정할 수 있더라도 정원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부속되어 있는 물건으로서 민법상 종물(從物)에 불과하여,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주물(主物)의 처분에 따르게 되어 있는바, 위 사안에 있어서도 정원석과 정원의 일부가 가져가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위 정원수와 정원석은 주택이나 대지의 매매에 수반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매수인인 귀하의 소유가 된다고 볼 것입니다.

☞ 문의 : 변호사 김제동 법률사무소 (031-829-9311)

【매도인이 약정도 없었던 정원석과 정원수 일부를 가져가려는 경우】

Q 저는 마소유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매도인某甲정원석과 정원수 일부를 가져가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으면서도 정원석과 정원수 일부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某甲의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요?

A 일반적으로 교량, 터널, 독, 토지에 실어져 있는 나무 등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그 토지와 함께 거래되고, 처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입목에관한법률」에 따라 수목의 집단을 등기하면 토지와는 별도로 매매하거나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으며, 또한 명인방법을 갖춘 나무는 토지로부터 분리시켜 별도로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식방법을 갖추지 않은 이상 나무는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이며, 위 사안에 있어서도 정원수나 정원석은 주택의 대지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 아니라 대지의 구성부분에 불과하여 주택의 처분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관례도 「토지상의과목(果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성으로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가해자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제21조 1항).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증인으로 소환 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은 당해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다(제22조 2항).

이러한 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와 매체를 통한 피해자 인권침해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노출이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국외로까지 널리 유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인권침해의 심각한 문제가 받아 들여야 할 것으로 본다.

☞ 문의 :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성폭력피해자 지원대책의 개선방안

셋째, 성폭력 피해에 대한 배상 명령제도의 도입으로 피해자는 배상명령제도를 통하여 범죄자에 대해 별도로 민사소송에 의한 배상청구를 하지 않고도 법원의 명령을 통하여 범죄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배상명령제도는 민사소송의 번잡함과 위험을 회피하면서 신속하게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소송 경제와 피해자의 이익을 도모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배상명

령제도는 성폭력범죄피해자에게는 해당하지 않고 있어 문제된다.(박미숙, "현행 법상 범죄피해자 지원방안", 피해자학연구 제 10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4, 146-148면)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물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여도, 장기적인 영향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피해여성 대부분이 지속적인 고통으로 자신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점으로 볼 수 있으며, 과도한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으므로 성폭력도 배상 명령제도권 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비밀보장의 제도적 장치 필요

전·기·상·식

한국전력공사 포천지점 수요관리과장 **나현철**



8만1천원(80,970원)으로 약 100%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계량기 고장 또는 검침착오인 경우 인터넷(Cyber지점)이나 관할 한전에 전화로 신고하시면, 현장에 나가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시는 요금을 재계산해 드립니다.

【청구서 재발행】

Q 청구서를 아직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청구서 송달기한 전기요금 청구서는 납기일 7일전까지 우편 또는 방문하여 송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청구서 재발행신청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지 못하셨거나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관할 한전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저희가 직접 방문하여 재 송달해 드림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납기 잔여일이 촉박할 경우에는 한전 계좌로 입금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 문의 : 포천지점 고객지원과(031-539-0231)

【요금과다】

Q 가정집인데 전기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전기요금이 평상시보다 많이 나오는 이유는?

- ① 집안에서 누전이 되고 있거나
② 에어컨(또는 전기장판) 등 소비전력이 매우 큰 가전제품을 사용하신 경우
③ 계량기 고장 또는 검침착오로 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누전인 경우 고객께서 직접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시어 수리하셔야 하며, 이 경우 누전으로 인한 요금은 고객께서 부담

하셔야 합니다.

☞ 누전차단기 미부설고객 누전차단인 요령

먼저 집안에 있는 모든 전기 기기의 코드를 빼고, 전기사용을 중지한 상태에서 계량기의 원인이 계속 돌아면 누전일 확률이 높습니다.

▶에어컨 또는 전기장판 등의 사용에 의한 경우

주택용요금제는 누전요금체제로 되어 있어 사용량이 조금만 증가해도 요금이 대폭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한달 전기 사용량이 300kWh에서 417kWh로 약 40% 증가시(가정용 9평형 에어컨을 하루 3시간씩 사용했을 때) 전기요금은 4만원(39,960원)에서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외과 과장 **이지현**



안정과 식이요법으로 대부분 호전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약물치료를 시도하게 됩니다. 약물요법으로는 우선 감마리놀렌산이 많이 포함된 달맞이꽃 자유를 1~3개월 간 투여해 보며, 이때 효과가 없으면 호르몬 제제를 처방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호르몬 제제는 다나졸로 약 2개월 복용합니다. 그 외에 항에스트로겐 제제인 타목시펜이나 진통제·이뇨제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호르몬 제제들은 체중증가, 남성화 등의 부작용이 심하여 주의가 요합니다.

식이요법

- 커피, 홍차, 초콜릿, 콜라 등 메틸잔틴 성분이 함유된 음식은 피할 것.
○ 지방질을 적게 섭취할 것.
○ 요산도가 많이 함유된 미역, 다시마 등의 식품을 섭취할 것.

☞ 문의 : 신부인과(031-539-9150)

유방이 아파요

- 1) 유방통의 원인과 분류
유방통은 주기적 유방통과 비주기적 유방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기적 유방통은 월경 전에 심하다가 월경의 시작과 함께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로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한 20대의 젊은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고 양쪽 유방이 모두 아픈 경우가 대부분이

며, 이 경우 호르몬 치료제를 투여하면 매우 효과가 좋으므로 호르몬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비주기적 유방통은 대개 원인 없이 발생하는데 일부 유방암, 섬유선종, 섬유낭종성질환, 유관확장증 등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2) 유방통의 치료
유방통을 적절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방통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유방암이나 기타 유방질환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심리적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사용하였기 때문에 상환자금에 대한 증빙서류로는 다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증여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증인 또는 재산취득자가 스스로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즉, 나이가 30세 미만이고, 해당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수증인 또는 재산취득자의 연간 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부채로 인정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 스스로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재산취득 시 부채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녀가 상당기간 저축을 하여 목돈을 마련한 뒤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친이 자녀에게 3천만원까지의 증여는 증여세를 안 내도 됩니다.

☞ 문의 : 세무사 박 운 중(031-872-6116)

【가족 간에 돈 거래할 때는 자금출처 소명요구에 대비하십시오.】

Q 올해 28세 된 직장을 다니는 자녀를 결혼시키면서 주택을 매입하게 되었는데, 총 2억원 중 1억 2천만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자녀의 저축과 부친의 통장에서 지급하였다. 나중에 대출금을 부친이 갚아줄려고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 되는지요?

A 재산을 취득했을 때 뿐 아니라,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할 것을 요구 받을 수 있

습니다. 귀하의 경우 당초 취득 시 대출금을 제외한 잔금에 대하여 자녀의 근로소득 증명 과 은행통장의 저축실적을 근거로 총액의 80%이상의 자금출처를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때 자녀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결혼한 가정으로서 대출금의 이자정도는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판단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금융 대출금을 상환할 때에도 상환금액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근로소득 증명과 저축액은 당초 취득 시의 자금출처 소명하는데

포천유림회관 임대입찰 공고

포천유림회관은 포천시 중앙상권지대인 포천버스터미널에서 100m내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4층의 벽돌조건물로 연건평 1,015평으로 예식장위주의 건물이며 1990년 8월 승강기를 미설치한 상태로 승강기설치가 가능하게 설계되었으며 주차장은 현재 약 50대의 주차능력이 되나 주차장 확장계획이 있으며 입주자가 건물의 개보수를 통하여 예식사업을 전개할 경우 고수익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유림회관 주차장 및 건물일부를 임대 입찰공고함

1. 임대입찰을 공고하는 시일

- 가. 유료주차장 약 200평 및 주차관리실
나. 지하식당 약 170평
다. 1층 예약실, 미장원등 약175평(사무실, 학원운영가)
라. 2층 예약실, 폐백실, 신부대기실등 약 137평
마. 4층 전체 약 218평(300석 대형회관, 식당겸용가)

2. 임대조건

- 가. 보증금 : 120,000천원
나. 임대료 : 최저가 월 6,500천원 부터
다. 승강기설치 : 승강기는 5층(옥상)까지 설치하되 설치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 포천향교와 협의설치하며 설치비용은 보증금에 포함, 승강기 설치비용은 약 150,000천원으로 예상되며 1년내에 반환예정
라. 임대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임차자의 요청에 따라 재계약 가능

3. 입찰방법 및 입찰일시

- 가. 입찰방법 : '2' 항의 조건을 충족하고 최고가 임대료 지불자 낙찰
나. 현장설명 및 입찰일시 : 2007. 8. 10(금) 11:00시 포천향교사무실
다. 낙찰시 입찰보증금의 1/10에 해당하는 계약금 준비

포천향교 전교

포천시 신읍동 23-4 유림회관 2층
포천향교사무실 ☎ 031-535-3186